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신홍식 의원 대표발의】

2023. 2. 20.

行 政 委 員 會

專門委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95호로 2023년 2월 9일 신흥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시 임기 만료된 자의 위촉 관련 규정 신설 (안 제17조제8항)

나. 재위촉 금지 기간 단축(안 제17조제9항)

다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3.2.7.~2.11./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은**

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**주요 내용을 살펴보면**

- **안 제17조(구성 등)제8항**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2회 연임으로 제한(제17조제7항)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해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
- **안 제17조(구성 등)제9항**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·목적·기능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2년 이내 재위촉 금지에서 1년 이내 재위촉

금지로 기간을 단축하되, 품위손상 및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기존의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기간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함.

○ **검토 결과**

현재 우리구는 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, 2023년 2월까지 4개 동에서 연임에 의한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[1] 일부 동에서는 위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.

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본 조례개정의 취지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주민자치위원회 현황(6개동)

동명	현원 (2023.1.기준)	신규	연임			
			1회	2회	2023년 만료	*만료일*
당산2동	21	9	3	9	9	2023.02.26.
도림동	21	11	5	5	2	2023.01.24.
신길1동	25	5	11	9	7	2023.02.26.
신길4동	22	7	12	3	3	2023.02.28.
신길7동	23	10	5	8	5	2023.05.25.
대림2동	20	6	9	5	X	X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